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지난 8월1일 공포되었다.

이중 본협회 회원사와 관련된 중요부분만 발췌하여 개정전과 비교 게재하기로 한다.



개 정 전	개 정 후
<p>제10조(시공관리자)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자격자(이하 “시공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 11.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가스설비시공의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가스기사 2급 이상·고압가스기계기능사 2급 이상 또는 고압가스 화학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다.2. 삭제 (91. 11. 9)3. 가스설비시공의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가스기사 2급 이상·고압가스기계기능사 2급이상·고압가스화학 기능사 2급이상 또는 고압가스 취급기능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다만, 500만원 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고압가스 취급 기능사 2급 이상 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p>제10조 본문중 “법 제15조 제3항”을 “법 제15조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3호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한다.</p>